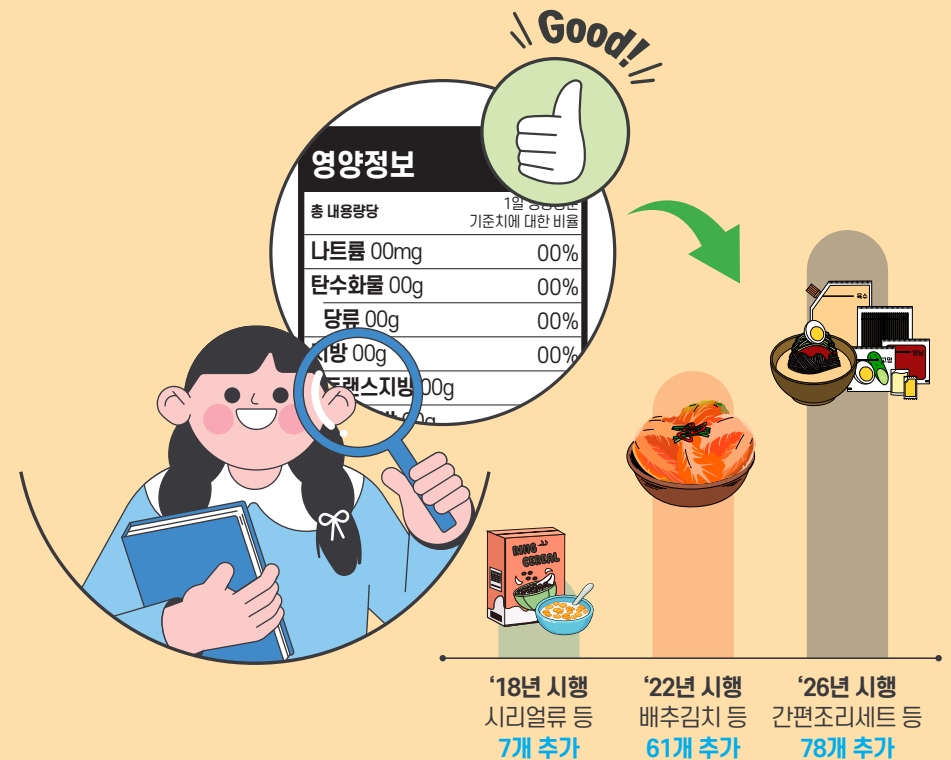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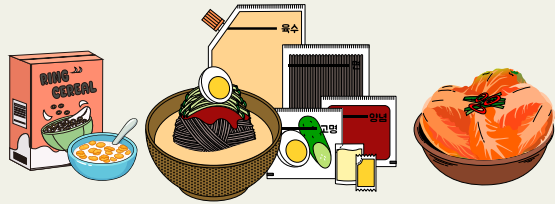
✓ **영양표시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영양표시를 안해도 됩니다.**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3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 4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5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식육 및 식용란



2026년부터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식품 선택권 강화를 위해 가공식품 영양표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부터 61개 품목의 영양표시가 완료되고,
78개 품목에 대해 영양표시가 확대 시행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61개 품목은 영양표시 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해당 품목류 매출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까지 확대 완료 됩니다.

✓ 61개 품목 영양표시 확대 완료 ('26.1.1.)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류(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식물성크림, 다류 중 액상차, 발효식초, 소스류(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카레(커리)), 향신료조제품, 김치류(김치속, 배추김치), 절임류(절임배추 제외), 조림류, 전분류(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류(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팥공 또는 견과류가공품류(팥공버터, 팥공 또는 견과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류(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알가공품류(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액, 알가열제품, 피단, 알함유가공품), 산양유, 어육가공품류(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기타 어육가공품), 젓갈류(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건포류(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조미김, 기타수산물가공품

✓ 78개 품목 영양표시 확대 시행 ('26.1.1.~)

- 2026년 1월 1일부터 78개 품목이 영양표시 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업종별 매출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 2022년 업종별 매출액이 120억원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영양표시를 해야하며,
- 2022년 업종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028년 1월 1일부터 영양표시를 해야합니다.

아이스크림믹스류(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사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설탕류(설탕, 기타설탕), 당시럽류(당시럽류), 올리고당류(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포도당, 과당류(과당, 기타과당), 엿류(물엿, 기타엿, 텍스트린), 동물성유지류(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어유, 기타동물성유지),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다류(고형차), 표준형영양조제식품(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고혈압환자용 식단형식품), 장류(한식메주를 사용한 한식간장, 청국장), 조미식품(카레(커리)분, 고춧가루, 실고추), 절임류(절임배추), 농산가공식품류(찐쌀, 효소식품), 식육가공품(갈비가공품, 식육케이싱, 식육간편조리세트), 버터유, 농축유류(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류(유크림, 가공유크림), 버터류(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유청류(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 한천, 기타동물성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추출가공식품, 벌꿀류(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로열젤리류(로열젤리, 로열젤리제품), 화분가공식품(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생식류(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즉석섭취·편의식품류(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기타식품류(효모식품, 기타가공품)

✗ 다만, 영양표시 제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추잉검), 열음류, 다류(침출차), 커피(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만 해당),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식초류(희석초산), 향신료가공품(천연향신료), 식염, 김치류(김치(배추김치는 제외)), 주류, 포장육,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기타식육 또는 기타알)